

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1995.1.25>

공고 제 호	
도로점용허가에 관한공고	
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	
년 월 일	
○○ 시장·군수 [인]	
점용자의 성명 주 소	
도로의종류	
노 선 명	
점용의구분	
점 용 목 적	
점 용 장 소	
점 용 면 적	
점 용 기 간	
점용물의종류	
공사실시의방법	
공 사 기 간	
도로의복구방법	
기 타 사 항	

21305-00211일

92.4.6 승인

210mm × 297mm

(신문용지 54g/m²)